

# 무엇이든 물어보세요~!

**Question** PCT 국제출원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?

**Answer**

- PCT 국제출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PCT 국제출원 서류의 작성 및 제출 : 출원서식은 특허청홈페이지(www.kipo.go.kr)→출원에서등록까지→출원신청→서면신청안내→민원서식 코너에서 PCT국제출원 관련 서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.
- 국제조사기관의 국제조사 : 국제조사 후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를 작성하여 출원인에게 송부하게 되며, 출원인은 필요한 경우 PCT조약 제19조에 의한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.(출원인이 국제사무국으로 직접제출)
- WIPO 국제사무국의 국제공개
-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국제예비심사 : 국제예비심사의 청구는 출원인의 선택적 절차이며, 국제예비심사기관은 특이성 유무를 판단하여 통상 우선일로부터 28개월까지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하게 됩니다.
- 지정관청(선택관청)에 대한 번역문 등 제출 : 우선일로부터 31개월 이내에 지정국의 국내법에 따라 번역문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PCT 국제출원은 취하로 간주됩니다. 단, 우선일이 2001년 7월 11일 이전 건에 대해서는 우선일로부터 20개월 이내(국제예비심사를 우선일로부터 19개월 내에 청구한 경우에는 우선일로부터 31개월 이내)에 지정국의 국내법에 따라 번역문을 제출해야 합니다.
- 심사의 진행 : 출원인이 번역문 등을 제출하고 심사청구하면 각 지정관청(선택관청)은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로 각 국 특허청의 국내법에 따라 심사한 후 특허 여부를 결정합니다.
- 국제출원에 대한 사무총괄은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식재산권보호기구(WIPO) 산하의 국제사무국(스위스 제네바 소재)에 의해 행하여집니다.

**Question** PCT 국제출원을 대리인 없이 직접 출원할 수 있습니까?

**Answer**

- PCT 국제출원은 대리인 없이 직접 출원이 가능합니다. 다만, 지정국에 그 번역문을 제출할 시에는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.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출원인이 해당 국가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**Question** 팩스를 이용하여 출원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?

**Answer**

- 출원인은 팩스를 이용하여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팩스에 의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류제출서에 원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- 기간 내에 원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출원인에게 제출을 명하고 제출 기간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, 그 서류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. 또한, 출원서, 명세서, 청구의 범위, 필요한 도면 또는 요약서의 원본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.